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손해보험

2. 조치일 : 2018. 3. 28.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 위험평가 운영 불합리 등

① 고객 유형과 상관없이 고액 보험료 기준으로 고객 위험을 평가함에 따라 고액의 단체 보험을 가입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객 유형(개인, 법인, 국가단체 등)을 반영하여 고객위험평가모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②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 확인사항을 전산 필수 입력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전산입력이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 확인절차 누락을 방지하고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필수 입력 사항으로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전산입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절차 및 방법을 내규에 명문화하며 동 절차 등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③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고객거래 확인서(보험청약서)'란에는 실제소유자와 대표자의 구분없이 기재가 가능하고, 전산시스템상 실제소유자 확인사항이 필수 입력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소유자 확인 누락 방지를 위해 관련 양식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점검절차 및 방법을 관련 내규에 명문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보고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체거래임이 확인되어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의 실질에 맞게 전산처리토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제외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절차와 방법을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에 명문화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등

①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이 일부 기준에서만 편중되어 발생하는 등 동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함에도 추출 기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시나리오 및 임계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의심거래 발생이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데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의 검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므로 의심 거래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의심거래 보고 절차별 보고시한 등을 관련 내규에 명문화하고 동 보고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